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 查 經 過	2
2. 提案說明要旨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3
4. 質疑 및 答辯 要旨	4
5. 討 論 要 旨	4
6. 審 查 結 果	4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小規模 庶民住宅 建設 및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小型共同住宅을 建築하는 建築主 및 同 住宅을 最初로 取得하는 分讓者에게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對象을 調整하기 위하여 同 條例에 다음 事項을 反映하여 一定其間 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課稅免除 對象을 新設하고자 함 (第 4條)
 - 60 m² 以下の 共同住宅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課稅하던 것을 小規模 庶民住宅의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40 m² 以下는 課稅 免除하고자 함.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4年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월 31일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本 改正條例案은 小規模 庶民共同 住宅 建設을 促進하기 위하여 建築主 및 最初로 取得하는 分讓者에 對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의 條例가 '91年末로 時限 滿了됨에 따라 小型 共同住宅에 對한 課稅免除 條項을 新設하고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依據 1991 . 11. 21.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첫째 : 60 m² 以下の 共同住宅에 對하여 100분의 50으로 課稅하였으나 小型共同 住宅인 40 m² 以下에 對하여는 課稅免除하는 條項을 新設하고 40 m² 超過 60 m² 以下는 從前의 規定에 依據 算出된 稅額의 100분의 50으로 課稅하기 위한 事案이며 (第 4條)

둘째 :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 日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 (附則 第 2項)

本 案은 小規模 住宅建設 事業主 및 入主者의 稅負擔을 18坪 規模의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從前의 100分の 50을 그대로 課稅하고, 12坪 規模의 共同住宅 및 賃貸住宅은 課稅免除하여 庶民들의 苦衷을 덜어주고자 하는 事案으로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依據 都市 零細民 生活安定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判斷되므로 條例案의 改正이 妥當함

4.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查 結 果 : 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 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小規模 庶民住宅 建設 및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小型共同住宅을 建築하는 建築主 및 同 住宅을 最初로 取得하는 分讓者에게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 나.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對象을 調整하기 위하여 同 條例에 다음 事項을 反映하여 一定期間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가. 課稅免除 對象을 新設하고자 함 (第 4條)
- 60 m² 以下の 共同住宅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課稅하던 것을 小規模 庶民住宅의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40 m² 以下는 課稅 免除하고자 함.
- 나.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參考事項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理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 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訂하여야 한다.
 - 第 112條 (稅率) ① 取得稅의 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 또는 年賦金額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第 131條 (不動產登記의 稅率) ① 不動產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1.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 (1) 農地 : 不動產 價額의 1,000분의 3
 - (2) 其他 : 不動產 價額의 1,000분의 8
 2. 第 1號 以外의 無償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不動產價額의 1,000분의 15, 다만 政府에 登錄된 宗教團體와 民法 第 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大統領令이 訂하는 法人이 所有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의 1,000분의 8로 한다
 3. 第 1號 및 第 2號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 (1) 農地 : 不動產 價額의 1,000분의 10
 - (2) 其他 : 不動產 價額의 1,000분의 30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法 : 揭示 公告 및 市 公報 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불균일과세)”를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 하고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제3항으로 한다.

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경감하지 <u>아니한다</u>.</p> <p>③ <u>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1990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1991년 2월 28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 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부 칙 (조례 제 1705호) ② (<u>시행기간</u>)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1991년 12월 31일까지</u> 시행한다.</p>	<p>----- ----- -----</p> <p><u>아니하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u></p> <p>(삭제)</p> <p>부 칙 (조례 제 1705호) ② (<u>적용시한</u>) ----- ----- <u>1994년 12월 31일까지</u> ----- -----</p>